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1일, 이인식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3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6월 9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
-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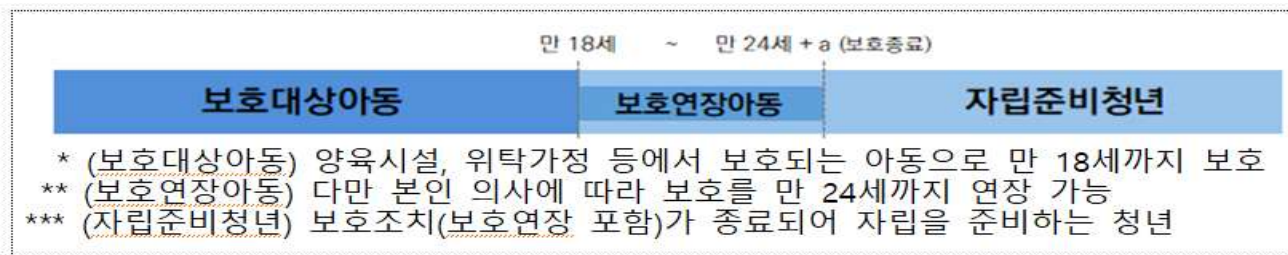
#### 1) 개정 이유

- 본 안건은 금천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였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
  - 자립 정착금, 주거 지원사업 등 자립 자활사업을 명시함
-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다. 검토의견



-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그동안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 왔으나, 정부가 이들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공식화하였음.
-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 개정안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타 지자체 제·개정 현황

○ 서울시 :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

- 자립준비청년 명칭 표기 : 서울시 및 7개 자치구(강남, 관악, 구로, 노원, 도봉, 성동, 은평)

※ 그 외 11개 자치구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조례 등으로 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